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198 호

2017년10월25일(수)

여 수 시 보

시 정 방 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
-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-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47호 무단방치차량 강제(폐차)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/3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49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공고 /5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50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 공시송달공고 /6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51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/8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53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 /9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5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(공고) /10
- 여수시 공고 제2017-2059호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/11

회 판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

여수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·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(대체압류 등)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17.10. 25. ~ 2017. 11. 24.(30일간)
2. 강제처리(폐차)일시 : 2017. 11. 27.이후
3. 강제처리(폐차)장소 : 여수시 소재 폐차장
4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같음합니다.
5. 공고 및 강제처리(직권폐차)대상 : 53너7659 외 4대
6. 유의사항

가.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(이전)

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직권폐차)하고,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(100~150만원)이 부과되며,

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강제처리(폐차)시 차량내 모든 물품(비품)도 함께 처분됩니다.

나. 이해관계인(저당 및 압류권자)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(대체압류등)를 하시기 바라며,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(직권폐차)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기타문의 여수시 교통과(☎061-659-4144)

2017년 10월 25일

여 수 시 장

무단방치차량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대상 세부내역(최*일)

명령 번호	자동차 번호	차명	성명	주민등록 번호	원부주소	방치장소	보관장소	구분	채권자/촉탁기관 /단속부서	등록일자	저당가액/ 공문번호 /단속공무원	압류내역/영치내역	
1	전남70 나7240	트라제XG	최*일	790324- 1*****	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14, 209동 30*호(죽림 부영2차)	여수시 소라면 죽림부영1차 103동 지하주차장내	호남폐차장	압류	여수시	2015.03.12	차량등록사 업소	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	
2									압류	여수시	2015.03.12	차량등록사 업소	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
3									압류	서울시 관악구	2015.05.08	교통지도과 12610	주정차위반
4									압류	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	2015.10.22	주차사업팀 -5783	공영주차장이용요금체납
5									압류	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	2015.10.22	주차사업팀 -5783	공영주차장이용요금체납
6									압류	서울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	2015.12.22	주차사업팀 -11036	부정주차요금체납
7									압류	서울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	2015.12.22	주차사업팀 -11036	부정주차요금체납
8									압류	여수시	2016.02.02	세무과-33 67	지방세체납처분
9									압류	여수시	2016.09.08	차량등록-2 3807	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
10									압류	여수시	2016.09.08	차량등록-2 3807	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
11									압류	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	2016.11.15	주차사업팀 6174	공영주차장이용요금체납
12									압류	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	2016.11.15	주차사업팀 -6174	공영주차장이용요금체납
13									압류	여수시	2017.06.12	차량등록-1 4532	검사지연과태료체납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수취인거절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7. 10. 25.

여 수 시 장

1. 처분제목 :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
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건축주 (행위자)	건축물 위치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1	이창규	소라면 봉두리 1145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/ 불법증축)	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	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** (평내동, 평내마을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)	주소불명
2	강혜선	소라면 봉두리 862번지	위반건축물 (농가창고/불법증축)	"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** (대림아파트)	주소불명

4. 공고기간 : 2017. 10. 25. ~ 2017. 11. 8.(15일간)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6. 기타사항

-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
바라며,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
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1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시 송 달 공 고

위반 건축물에 대한 「건축법」 제80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에 따라 소유자에게 『위반 건축물
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수
취인 거절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7. 10. 25.

여 수 시 장

1. 처분제목 :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
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건축주 (행위자)	건축물 위치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1	황미운	돌산읍 죽포리 309-7번지	위반건축물 (휴게실/ 불법증축)	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	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52, 10*동 9**호 (신기동, 신기동 우림필유아파트)	폐문부재
2	김동근	소라면 봉두리 산183-1 외2필지	위반건축물 (주택 외/ 불법증축)	"	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396-**	폐문부재
3	박호	여서동 129번지	위반건축물 (창고 / 불법신축)	"	여수시 안산1길 136, 10*동 8**호 (안산동, 모아미래도아파트)	폐문부재
4	박석봉	화장동 882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증축)	"	여수시 무선로 50, 10*동 6**호 (학동,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)	폐문부재
5	윤재곤	고소동 309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외/ 불법증축)	"	여수시 고소4길 3*-* (고소동)	폐문부재
6	자내리 교회	호명동 1300-6번지	위반건축물 (차고/ 불법증축)	"	여수시 호명1길 1** (호명동)	폐문부재
7	왕재근	웅천동 1694-1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외/ 불법증축)	"	여수시 예올마루로 37-**, 1**호 (웅천동)	폐문부재
8	문준현	웅천동 1694-1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외/ 불법증축)	"	여수시 박람회길 61, 1*동 9**호 (덕충동,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)	폐문부재
9	김난경	웅천동 1694-1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증축)	"	여수시 소호로 4**, R동 *호 (소호동 지에스칼텍스쌍봉사택)	폐문부재
10	이현	소라면 복산리 산157-4번지	위반건축물 (측사/ 불법신축)	"	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3*-*	폐문부재
11	백봉기	화장동 882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증축)	"	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57, 1**동 7**호 (산호 오크힐아파트)	폐문부재
12	김경순	화장동 882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증축)	"	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3, 1**동 11**호 (시전동, 우미타운)	폐문부재
13	김태식	공화동 54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신축)	"	여수시 공화북8길 * (공화동)	폐문부재
14	이경옥	소라면 대포리 1624-1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/ 불법증축)	"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6, 3**동 3**호 (청당동, 버들마을우미리아파트)	기타
15	박순매	고소동 50-1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/ 불법증축)	"	여수시 고소3길 ** (고소동)	폐문부재
16	김진선	돌산읍 율림리 55-2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/ 불법증축)	"	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**	기타
17	서경희	미평동 282-1번지	위반건축물 (창고/ 불법신축)	"	여수시 미평로 77, 2**동 12**호 (미평동, 미평주공아파트)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17. 10. 25. ~ 2017. 11. 8.(15일간)
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
6. 기타사항

-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오니 자진 시정(철거)하시기 바라며

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1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수취인거절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7. 10. 25.

여 수 시 장

1. 처분제목 :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
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건축주 (행위자)	건축물 위치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1	장창수	웅천동 1694-1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증축)	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	여수시 소라면 원죽길 8*	폐문부재
2	강병관	화장동 882번지 (분산상가동 101호)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증축)	"	여수시 여서로 11*-*(문수동)	이사불명
3	최강호	소라면 봉두리 산183-1 외 2필지	위반건축물 (주택 외3/ 불법증축)	"	여수시 예울마루로 30 , 1**동 90*호(웅천동,지웰@)	이사불명
4	장현근	소라면 복산리 산157-4번지	위반건축물 (축사/ 불법신축)	"	여수시 좌수영로 682-34 , 1**동 7**호 (봉계동, 로얄골드빌)	폐문부재
5	진인석	화장동 882번지 (주상가동 106호 외2)	위반건축물 (소매점/ 불법증축)	"	여수시 양지1길 ** (미평동)	폐문부재
6	엄익명, 김미란	소라면 죽림리 576 외 1필지	위반건축물 (창고/ 불법신·증축)	"	여수시 선원2길 3*-*(선원동)	폐문부재
7	주병호	공화동 54번지	위반건축물 (점포/ 불법신축)	"	여수시 대경도길 48-*** (경호동)	폐문부재
8	조학성	봉산동 718-1번지	위반건축물 (창고/ 불법증축)	"	여수시 충민공원길 6 , A동 1**호 (덕충동, 태창맨션)	폐문부재
9	이은자	돌산읍 올림리 55-2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/ 불법증축)	"	여수시 흥국상가길 1*-*(신기동)	기타
10	신철	웅천동 1714-6번지	위반건축물 (주택/ 불법증축/대수선)	"	여수시 진남로 2*-*(충무동)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17. 10. 25. ~ 2017. 11. 8.(15일간)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6. 기타사항

-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1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14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 번호	연장 허가 번호	어업의 종류 (양식방법)	면적 (ha)	어장 위치	면허기간	연장허가 기 간	수산자원 조성금 (천원)	어업권자		비고
								주소	성명	
11169	2017-47	패류 양식어업 (바닥식)	15	화정 여자	2008.01.04. 2018.01.03.	2018.01.04. 2028.01.03.	1,500	여수시 화정면 여자대동길 37-5	최광오 외 2인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17. 10. 25.

여 수 시 장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및 제37조(영업허가 등)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(청문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(이사감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7. 10. 25.

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통지
2. 공고기간 : 2017. 10. 25. ~ 2017. 11. 9. (15일간)
3. 근거법규 : 식품위생법 제36조, 제37조 및 제75조
4. 청문일시 및 장소 : 2017. 11. 30.(목) 14:00 여수시청무료법률상담실
5.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

업종	업 소 명	영업소 소재지	대표자	위반내용	처분내용
일반음식점	대한곱창	여수시 봉산벽수길 3(봉산동)	허경옥	영업시설물 멸실	영업소 폐쇄

6. 유의사항 : 위 공시송달(공고)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 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「영업소 폐쇄」 됨을 알려 드립니다.
7. 문의사항 : 여수시 식품위생과 강정욱(☎ 061-659-4237)

공 시 송 달 공 고

어선법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25일

여 수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17. 10. 25. ~ 2017. 11. 8.(14일간)
2.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

어선법 위반 어선 및 소유자				위반사항	과태료 부과금액(원)
성명	주 소	어선번호	선명 (톤수)		
배*혁	전남 여수시 여서2로 32-2(여서동)	0706002-646130*	금영호 (4.01)	어선검사 미수검	300,000
황*내	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634-9	9801098-646750*	대덕호 (0.48)	어선검사 미수검	300,000
곽*옥	전남 순천시 유동길 105, 304/201(조례동,주공@)	0609010-6461303*	시험장2호 (0.66)	어선검사 미수검	120,000

3.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: 전남 여수시청 수산경영과(☎ 061-659-3919)
4. 기 타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가산금(증가산금) 징수, 징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.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,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1조,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소유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